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4년 9월 17(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계량측정제도과 최미애 과장(043-870-5510), 주순영 주무관(043-870-5515)

2014년 국제법정계량기구 정량표시상품 기술위원회 총회 서울 개최

- 포장상품의 양표시에 대한 국제기준 논의-

□ **국민 생활과 밀접한 포장상품의 양 표시의 국제기준**을 만드는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정량표시상품 기술위원회 총회가 9. 15. ~ 9. 19.(5일간)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열린다.

○ 정량표시상품 기술위원회(Prepackaged Products Technical Committee)는 계량에 관한 국제기준의 통일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소비생활제품의 국제적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회원국의 제도적, 기술적 논의를 통해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다.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Organiz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gie Légale)는 세계 126개 회원국이 참여함.
* 정량표시상품: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실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상품 (예: 우유 900ml, 고추장 1kg, 호박엿 340g, 락스 4 L)

□ 서울총회에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20개 회원국 40명의 정부대표가 참석**하며, 회원국 간의 정량표시상품의 기술기준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를 위해 **피터 메이슨(P. Mason)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회장 피터 메이슨(P. Mason)이 특별히 참석했다.**

○ 이번 회의는 포장상품의 양에 대한 정확성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성의 기준과 검사**방법,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포장상품에 표시하는 방법과** 포장상품의 관리제도를 논의한다.

○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진국의 무역규제와 개발도상국의 상충한 이해관계를 조율함으로써 포장상품의 표시방법을 국제적으로 일치시키고, 국내산이나 외국산 상품의 **양 부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정량표시상품 기술위원회 서울총회 개최가 국내 수출입업체가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국제무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포장상품 관련 해외 규제정보도 지속해서 제공하고, **국민 소비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원활한 국제무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장상품의 정량관리에 국제기준을 적용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붙임] 1. OIML/TC6 개요
2. OIML 회장 주요이력
3. 각국의 정량표시상품 관리 사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주순영 주무관(☎ 043-870-55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제법정계량기구(OIML)/TC6 개요

❑ 개요

○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행정상, 기술상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제정하는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기술위원회

* OIML :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gie Légale(국제법정계량기구)
우리나라는 1978. 6. 1 정회원국으로 가입

○ **의 장** : 윌리업 쿨(Willem Kool/영국)

○ **간 사** : 제이콥 마르네웩(Jaco Marneweck/남아프리카공화국)
e-mail : marnewj@nrcs.org.za
Tel : +27 12 428 5152 , Fax : +27 12 428 6552

○ **회원국** : 정회원 30개국, 준회원 17개국

정회원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크로아티아, 쿠바,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중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베트남
준회원	핀란드, 아일랜드, 루마니아, 스웨덴, 탄자니아, 보스와나, 불가리아, 대만, 이란, 이스라엘, 라이베리아, 리투니아, 남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쉘,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레이트

○ **발행 문서**

- R 79 : 정량표시상품 표시사항(1997, 개정 중)
- R 87 : 정량표시상품 샘플링 요구사항(2003, 개정 중)

○ **주요 사업**

- 사업범위 확대에 따라 '14부터 세부 프로젝트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임

* 프로젝트 1 : 에어로졸의 질량 및 부피량 표기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검토
* 프로젝트 2 : 계량공무원의 사후 관리 시 샘플링 간소화 방안
* 프로젝트 4 : 정량표시상품의 국제인증제도 개발
* 프로젝트 5 : MCB(Measuring Container Bottles, 부피표기가 된 포장용 병)

붙임 2 OIML 회장 주요이력

개인이력	○ 피터 메이슨 (Mr. Peter Mason) - 국적 : 영국 - 옥스퍼드 Oriel대 졸업 
주요 이력	- 영국 국립계량원(National Measurement Office, NMO) 원장 역임 - 1973년 영국 상무성 입사. 인수위원회, 금융서비스, 경쟁정책 및 소비자 보호정책 관련 업무 수행 - '11. 10. ~ OIML 회장 (임기 5년)

붙임 3 각국의 정량표시상품 관리 사례

❑ 우리나라

❖ 대상품목

●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쌀, 조리식품 등 26종






❑ 유럽

유럽의 e-marking 제도

- 법정계량유럽연합(WELMEC, 30개 회원국)의 e-마크 지침에 따라 1990년 초부터 양(量)을 보장하는 제도 실시
 - OIML R 79 및 R 87 기준
 - 수입품에 대하여는 수입국의 허가 또는 e-마크의 인증 요구







❑ 중국

중국의 e-marking 제도

- 2001년 4월부터 EU의 e-마크제도를 도입한 C-마크제도 시행
- 인증 받은 상품에는 "C" 마크를 부착
 - 1,200여 업체 인증(2006)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에 의해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



